

# 예산총칙

201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586,470,565	77,594,117
일반회계	2,236,648,316	67,099,449
특별회계	349,822,249	10,494,667
공기업특별회계	261,458,671	7,843,76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2,979,968	3,689,39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38,478,703	4,154,361
기타특별회계	88,363,578	2,650,907
교통사업 특별회계	29,291,873	878,75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268,498	68,055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3,314,836	99,445
대지보상 특별회계	1,576,000	47,280
기반시설 특별회계	104	3
수질개선 특별회계	20,201,206	606,036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0,155,003	304,650
균형발전특별회계	21,556,058	646,68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676,061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7,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